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596
----------	-------

발의연월일 : 2023. 1. 20.

발의자 : 강대식 · 金炳旭 · 유의동
서정숙 · 김용판 · 백종현
안철수 · 김상훈 · 이인선
배준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기관(이하 입주기관이라 함)이 산·학·연 클러스터의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을 양도하려는 경우에 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부지, 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을 제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용지 양도제한 등 다른 법률의 입법례처럼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혁신도시 내에 다른 법률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 단지 등으로 중복 지정된 지역의 경우 입주승인, 입주승인의 취소 및 양도제한 등 입주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 법과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복 적용되고 있어 입주기관에 과중한 부담이 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입주기관이 산·학·연 클러스터의 건축물등을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가격 제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혁신도시 내에 다른 법률에 따라 특구 등이 지정된 지역의 입주승인 등 입주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 특구 등을 지정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입주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도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제3항, 제5조의9 신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의”를 “입주기관이 산·학·연 클러스터의 건축물등을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하려는 경우 그”로 한다.

제2장에 제5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9(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특구 등의 입주승인 등의 적용) 혁신도시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특구 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입주승인, 입주승인의 취소 및 양도제한 등 입주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 특구 등을 지정·고시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고,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2.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첨단의료복합 단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구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지의 양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산·학·연 클러스터의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의4(부지의 양도제한 등)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② (생 략) ③ <u>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의</u> 양도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 다. <p>1. • 2. (생 략) ④ (생 략) <u><신 설></u></p>	<p>제5조의4(부지의 양도제한 등)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② (현행과 같음) ③ <u>입주기관이 산·학·연 클</u> <u>러스터의 건축물등을 취득일부</u> <u>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u> <u>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u> <u>기 전에 양도하려는 경우 그--</u> ----- -----. <p>1. •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p> <p><u>제5조의9(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u> <u>된 특구 등의 입주승인 등의</u> <u>적용) 혁신도시 내 다음 각 호</u> <u>의 어느 하나의 특구 등으로</u> <u>지정·고시된 지역의 입주승인,</u> <u>입주승인의 취소 및 양도제한</u> <u>등 입주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u> <u>당 특구 등을 지정·고시한 법</u> <u>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고, 그</u> <u>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u> <u>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u> <u>는 바에 따른다.</u></p>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2.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구 등